

審 査 報 告 書

運 營 委 員 會
2000. 2. 7

1. 審 査 經 過

가. 發 意 日 字 : 2000. 2. 1

나. 發 意 者 : 가대현 의원의 10인

다. 回 附 日 字 : 2000. 2. 1

라. 上 程 日 字 : 2000. 2. 7

2. 提 案 說 明 要 旨 (提 案 說 明 : 賈 大 鉉 議 員)

가. 提 案 理 由

-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 조례의 위임근거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맞도록 그 근거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임.

나. 主 要 骨 子

-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조례의 인용법령중 “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”를 “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”로 변경하고,
- “공인회계사등”을 “공인회계사·세무사등”으로 변경코자 함.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본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관련규정 “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”과 “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중” “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”를 “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”로 변경하여 개정공포됨에 따라서, 본 조례도 개정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,
-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.

6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136 호
의결 년 월 일	2000. (제 회)

서산시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발 의 자	가대현 의원외 10인
발의년월일	2000. 2. 1.

서산시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36호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00. 2. 1
발 의 자 : 가대현의원외 10인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 조례의 제정 위임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그 근거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조례의 인용 법령중 “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”를 “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”로 변경하고(안 제1조).
- “공인회계사등”을 “공인회계사·세무사등”으로 변경함(안 제3조).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지방자치법 제125조(결산)
 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2(검사위원의 선임)
및 제47조(결산검사사항)
 - 서산시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(목적)
및 제2조 제1항(선임방법 및 절차)

서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”를 “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·제47조의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공인회계사등”을 “공인회계사·세무사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개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</u>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서산시의회의원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이나 <u>공인회계사등</u>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서산시의회가 선임한다. 이 경우 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의원이 아닌 결산검사위원은 서산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. ②~④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<u>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·제47조의</u>-----</p> <p>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----- ----- -----<u>공인회계사·세무사등</u>-----</p> <p>②~④(현행과 같음)</p>